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07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정태호·서영교·한병도

김태년 · 강준현 · 조 국

정동영 · 안도걸 · 이재정

이건태 · 정성호 · 김주영

이학영 · 이수진 · 임광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, 혹한,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, 이로 인해 온열·한랭질환, 감염병,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.

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하지만,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 강을 보호·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·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37 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,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기후변화 보건의료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.

제37조의3(종전의 제37조의2)제1항 중 "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"를 "지구온난화"로 한다.

제37조의4(종전의 제37조의3)제2항제1호 중 "제37조의2제2항"을 "제37조의3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7조의2(기후변화 보건의료) 국
	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
	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
	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
	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
	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
	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
	<u>다.</u>
제37조의2(기후변화에 따른 국민	제37조의3(기후변화에 따른 국민
건강영향평가 등) ① 질병관리	건강영향평가 등) ①
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	<u>지구온난화</u>
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	
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	
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	
가(이하 "기후보건영향평가"라	
한다)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	
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	
여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7조의3(전담기관의 지정 등)	제37조의4(전담기관의 지정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	2
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	

행한다.

- 1. <u>제37조의2제2항</u>에 따른 실태 조사 실시
- 2. · 3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
----.

1. 제37조의3제2항-----

2. • 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